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7월 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7월11일)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배효원)

    제안사유
    ○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체 재원 및 외부 재원, 공채발행 등 조달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3.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번호	제160호
의결년월일	2003.7.15 (제105회)

제출연월일 : 2003. 7. 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체 재원 및 외부재원, 공채발행 등 조달재원을 특별회계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골자

○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 건설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
4. 수탁사업 부담금
5.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6. 본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7.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와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지방채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5. 기타 특별회계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